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허윤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khalfah@daum.net

언론보도로 명예 등이 훼손된 경우 위자료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징벌적으로' 물릴 수 있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소송의 대상을 '악의적 허위보도'로 한정했다. 즉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고 있지만 단지 상대방을 공격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한 경우에 한해 소송 대상이 됨을 명확하게 했다. 덧붙여 언론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보도를 하는 데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배상액을 높이는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처럼 개정안이 언론사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하더라도 실제 언론사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피해는 크지 않고, 결국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판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31%를 기록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한정할 경우 원고 승소율이 39.74%에 불과했다. 언론에 대한 손

해배상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통계이다.

언론의 신뢰도·책임성 강화 위한 제도 도입 필요

사실 지난 총선 과정 및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문제되었듯,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사실 관계를 벗어난 오보로 인해 언론환경은 혼란한 상황이다. 유튜브의 가짜 뉴스가 언론 보도로 재생산되고, 반대로 언론에서 언급한 허위 사실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 심각한 수준으로 각색되기도 한다.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은 통제가 불가능하며, 일단 한번 퍼지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불가능해진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을 막아보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가짜뉴스의 문제점 이외에도 우리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개정안에 힘이 실리는 배경 중 하나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에서는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2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해에도 22%로 최하위였고, 관련 조사에 포함된 이래 매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한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81%가 찬성했다고 한다. 물론 여론조사 자체는 질문의 순서, 관련 내용의 선택 등으로 왜곡될 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 상당수가 언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그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하다.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 필라델피아에서 발행되는 인콰이어러는 250억원이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콰이어러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을



보도하며, 친소 관계로 인해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했다. 당연히 변호사는 허위보도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인콰이어러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해 어마어마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여했다. 이후 미국 언론이 상대방에 대해 의혹보도를 하면서 더 많이 취재하고, 더 조심스럽게 기사를 쓰게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의 언론통제 야욕’,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악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물론 완전하게 틀린 주장은 아니다. 손해배상액이 대폭 상승한다면, 100%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혹 보도를 스스로 제한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언론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윤리, 오보 방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정정보도에 인색한 언론 환경을 바꾸고자 매일 1개 이상의 정정보도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겨레는 저널리즘책무실을 신설해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국민일보와 KBS 등은 기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적어도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올바른 길을 가는 언론은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언론은 우리 사회를 이끄

는 동력이 된다. 언론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권력의 뒷모습 등이 공개되어,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때문에 공정한 언론, 바람직한 언론이 살아남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언론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자신을 공격하는 언론을 거짓언론, 가짜뉴스라고 펌하하는 일은 이미 100여년 전에 발생했다. 나치는 이미 1920년대에 국가 사회주의 이념을 반대하는 상대 언론을 지칭하며 ‘Lügenpresse’, 즉 가짜언론이라고 표현했다. 무서운 일은, 트럼프 지지자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전에서 ‘Lügenpresse’라는 피켓을 사용하며 민주당 성향의 언론을 공격했다는 점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게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언론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이 어렵도록 하는 것이다. 부당한 언론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법원이 사전에 차단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부당소송금지법은 당사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지속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절차금지명령이 발해진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자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원은 신청에 의해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소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단순하게 찬성,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의 언론환경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못을 한 언론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대신 악의적인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줘야하는 것이 언론,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KAA**